

2021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(공고)

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 2021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문의 : 070-8633-8705)

◀아 래▶

1. 개 최 일 시 : 2021년 06월 23일(수) 오전 10시

2. 개 최 장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, 58 501호 (㈜씨프로 회의실)

3. 회의 목적 사항

가 - 의안내용

- 제1호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* 정관 변경 (별첨1 정관변경내용참조)

4. 경영 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주주총회장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사항

- 직접행사 : 신분증, 법인(개인)인감, 법인(개인)인감증명서(주총일 3개월 이내)

- 대리참석 : 위임장(인감날인), 주주 인감증명서(주총일 기준 3개월 이내), 대리인의 신분증

< 별 첨 >

1. 정관 변경 신.구 대비표

2. 위임장 1부

2021년 06월 08일

주식회사 씨프로

대표이사 이영수(직인생략)

정관 신규조문대조표

변경 전 조문	변경 후 조문
<p>조문 추가</p>	<p>제 9 조의 2 (종류주식)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본조에서 정한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(이하 본 조에서 '종류주식'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종류주식의 총 발행한도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 분의 1 로 한다. 단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은 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p>③ 종류주식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 주당 1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.</p> <p>④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은 유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,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종 종류주식으로 한다. 다만,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(이하 본 조에서 '배당우선 종류주식'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배당우선 종류주식은 액면금액(또는 1 주당 발행가액) 기준으로 연복리 2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</p> <p>2.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우선 종류주식이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</p> <p>3. 배당우선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</p>

배당한다.

4.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종류주식은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

5. 이익배당과 관련한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효력발생 시기, 미지급 배당금의 처리,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, 기타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배당재산의 가액 결정방법,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⑥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(이하 '잔여재산분배우선 종류주식'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

1. 잔여재산분배우선 종류주식은 본 회사가 청산할 때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과 최초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금액, 미지급된 배당금 및 상환가액(상환 종류주식의 경우)의 한도까지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.

2. 본 회사의 잔여재산은 동산, 부동산, 지적재산권 등으로서, 청산인이 이를 현금으로 환가한 후 분배하기로 한다.

3.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잔여재산의 가액 결정방법,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⑦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(이하 "상환 종류주식"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

1. 상환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, 시장상황 기타 상환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

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
상환일 이전에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
이를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. 다만,
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
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,
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
한다.

2. 상환기간(상환청구기간)은 15 년을 초과하지 않는
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
상환기간(상환청구기간)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
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
때까지 상환기간(상환청구기간)은 연장될 수 있다.

3.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
유가증권이나(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) 그 밖의
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.

4.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다음 각목과
같이 정할 수 있다.

가) 회사는 상환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
상환할 수 있다. 다만,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
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
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, 안분비례시 발생하는
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

나)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 주일 전에 그
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
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
5.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다음
각목과 같이 정할 수 있다.

가) 주주는 상환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
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.
다만,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이익이 부족한
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
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
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, 안분비례시
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

나) 상환청구 주주는 2 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
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
한다.

6. 상환권의 행사방법, 절차, 효력 등 상환권 행사에

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⑧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, 주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종류주식(이하 "전환 종류주식"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

1. 전환기간(전환청구기간)은 전환 종류주식 발행일 익일부터 15년 이내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동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전환기간(전환청구기간) 만료일 다음날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

2. 전환 종류주식에 대한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. 다만,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전환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.

3. 전환권을 행사한 주주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하되,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4. 기타 전환청구의 절차, 효력, 전환조건,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의 조정, 기타 전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⑨ 기타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 주주와의 계약에 의한다.

⑩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본조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.